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830
----------	-------

발의연월일 : 2025. 12. 3.

발 의 자 : 이용우 · 정준호 · 김태선
민병덕 · 박 정 · 안호영
이학영 · 전종덕 · 김영호
장철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모든 국민은 헌법과 국제노동규범에 따라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기준에 관한 권리, 노동3권 등 기본적인 노동인권을 보장받아야 함. 그러나 현실의 노동현장에서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 권리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노동인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침해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현재 노동인권교육은 체계적인 법적 근거 없이 일부 기관이나 단체의 자발적 노력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별 · 계층별로 교육 기회가 불균등하고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학교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청소년(만 15~24세)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

사'에 따르면, 노동 중 부당한 일을 경험했을 때 참고 일하거나 그만두는 등 소극적으로 반응한 청소년(만 15~24세)이 약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별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나.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에 노동인권교육 특별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가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국가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노동인권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은 이를 반영하여야 함(안 제10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사회 노동인권교육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 등에서 사업주 또는 근로자·노무제공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 등에서 사업주 또는 근로자·노무제공자·프리랜서 등이 실시하는 노동인권교육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 따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의 기관을 노동인권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5조).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노동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누구나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3권 등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며 노동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노동인권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동인권교육을 말한다.
3. “사회 노동인권교육”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15조에 따른 노동인권교육전문기관, 노동인권교육 관련 단체, 「평생교육법」 제2

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동인권교육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동인권교육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생애주기별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노무제공자·프리랜서·청소년·여성 근로자 및 이주배경 근로자 등 노동인권 보호에 취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인권교육 운영 현황과 국민의 노동인권 의식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동인권교육정책의 심의·의결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소관 정책자문위원회에 노동인권교육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노동인권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노동인권교육 현황 및 추진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노동인권교육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및 중립성에 관한 사항
5. 노동인권교육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7.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1. 고용노동부·교육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노동계, 경영계 중에서 노동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학계, 노동전문가 중에서 노동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국가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인권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노동인권교육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노동인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4.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노동인권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가계획의 이행 점검 및 평가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에는 국가계획의 수립 절차를 준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지역노동인권교육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역노동인권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소관 업무에 반영한 추진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국가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노동인권교육의 추진성과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노동인권교육의 추진성과 평가의 항목,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 노동인권교육)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이 제1항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회 노동인권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노동인권의식 함양 및 노동관계법 이해를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단체와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노동인권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사회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2. 사회 노동인권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사업장 등에서의 노동인권교육)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 또는 사업장 밖에 설치된 교육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에서 사업주 또는 근로자·노무제공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노무제공자·프리랜서 등이 사업장등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인권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노동인권교육주간) 국민의 노동관계 법령 이해력과 노동인권의식을 높이고,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년을 노동인권교육주간으로 한다.

제15조(노동인권교육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의 법인·기관·단체를 노동인권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인권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교육과정, 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노동인권교육전문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2.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3. 교육 시설·장비의 설치 및 활용
4. 노동인권교육 관련 법인·기관·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5. 그 밖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노동인권교육전문기관의 구체적인 지정요건, 지정절차와 그 밖의 구체적인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동인권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의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노동인권교육전문기관 등 법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